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237
----------	-------

발의연월일 : 2026. 9. 9.

발 의 자 : 장철민 · 권향엽 · 김원이
송재봉 · 백혜련 · 정진욱
허성무 · 박희승 · 임문영
전은수 · 오세희 · 이언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4제2항제2호).

법률 제 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4제2항제2호 중 “수사를 위하여 「형사소송법」에”를 “수사 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같은 법에”로, “수사기관의 장이”를 “수사기관의 장 또는 검사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의4(비밀유지) ① (생 략)	제38조의4(비밀유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업무를 담 당하면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 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 할 수 있다.	②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범죄의 <u>수사를 위하여 「형 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수사 기관의 장이</u> 요청하는 경우	2. ----- <u>수사 또는 「형사소송 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 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같은 법에 ----- 수사 기관의 장 또는 검사가</u> ---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